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7
----------	------

2016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0월 17일, 김광수(도봉) 의원 외 14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광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장이 설치·운영 중인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자 하는 것으로 아리수 음수대의 수돗물을 수질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수돗물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아리수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은 아리수 음수대의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기 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아리수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함)는 동 조례 제8조에 따라 탁도 등 4가지 항목¹⁾에 대하여 분기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수질검사 결과표를 음수대 또는 인근 게시판에 부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이외의 수질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조례안과 같이 수질검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음수대의 위생적 관리 강화와 더불어 음수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학교, 관공서 내부 음수대

공원 등 야외 음수대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결과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음수대 수질검사 항목 : pH, 탁도, 잔류염소, 미네랄 등 4개 항목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수질검사) 시장은 설치·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설치·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u>〈신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u>